【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고·주의요구

제　　목　심신안정실 구성물품 구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긴급출동 현장대원의 스트레스 예방·완화를 위한 심신안정실 운영을 위해 2017. 5. 29. 45백만 원의 예산으로 안마의자 외 17종에 대하여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구입(7종, 4,150천 원)과 수의계약(11종, 40,850천 원)의 방법으로 구입계획을 작성, 내부결재를 받은 후 총 21종의 물품을 [표]와 같이 구입하였다.

[표] 2017년 심신안정실 구성물품 구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물품명	단가	수량	가격	지급일	구입처	구입방법
1	비디오프로젝터	1,448	1	1,448	'17. 6. 29.	♣♣♣♣	--
2	공기청정기	530	1	530			
3	텔레비전	1,036	1	1,036			
4	텔레비전 거치대	50	1	50			
5	책상	227	1	227			
6	작업용의자	83	6	500			
7	회의용탁자	157	1	157			
8	안마의자	3,650	3	10,950	'17. 6. 30.	(주)△◎	**계약
9	의료조합자극기	5,940	1	5,940	'17. 6. 30.	(주)♡♡♡	**계약
10	피톤치드 리필액	88	5	440			
11	산소발생기	3,650	1	3,650			
12	수압 마사지기	9,800	1	9,800	'17. 6. 30.	■■■◈	**계약 (특허)

13	족욕기	770	2	1,540	'17. 6. 30.	(주)♣♣♣	**계약
14	홈시어터	623	2	1,246			
15	무릎케어다리마사지기	770	1	770			
16	체성분 분석기	3,600	1	3,600			
17	혈압계	1,560	1	1,560			
18	리클라이너 3인용	1,354	1	1,354			
19	빔스크린	53	1	53	'17. 7. 11.	♡♡♡	인터넷
20	신발장	88	1	88	'17. 7. 11.	목림가구	개별
21	서랍장	61	1	61	'17. 12. 29.	♡♡♡	인터넷
합계				45,000			

2. 계약 사전절차 및 회계부서 계약요청 미이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르면 집행부서의 장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계약 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사업추진의 합법성, 필요성과 더불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적정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르면 집행부서의 장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을 제외하고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시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제3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대한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계약업무는 본청 재무관이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감사 시 확인된 사항

그런데도 ○○○○○ ☆☆☆☆☆는 관련 예산 반영 금액과 구입계획 상의 심신안정실 구성물품 18종의 총액이 45백만 원이고,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7종, 4,150천 원)을 제외한 물품의 추정금액이 2천만 원 이상(11종, 40,850천 원)임에도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조달 물품을 제외한 11종의 물품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본청 재무관(회계과)에게 계약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

3. 분할수의계약으로 예산절감 노력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0조, 제7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물품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특허를 받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물품 계약 시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의계약 시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대상 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세출예산 운영 일반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인 경우에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 구매 시 특정제품 규격을 명시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할 수 없고, 재공고 입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와 계약 체결 후 해제·해지된 경우에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감사 시 확인된 사항

그런데도 ○○○○○ ☆☆☆☆☆에서는 안마의자 등 총 11종([표]의 연번 8~18)의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조달청장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적절한 대용품과 대체품이 있음에도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 요청을 검토하지 않았고,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할 수 없는데도 구입계획 수립 전 물품 4종(안마의자, 체성분분석기, 발마사지기, 족욕기)에 대하여 각 물품 당 2개의 상품 규격을 제시하여 직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계획에 특정제품 규격을 명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수압마사지기(특허물품), 홈시어터 등의 물품도 특정 상품 규격을 구입계획에 명시하여 총 11종 40,850천 원의 물품을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부결재를 받았다.

이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2인 견적 수의계약 안내 공고 절차도 없이 [표]와 같이 11종의 물품을 4개의 업체와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4,902천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 ☆☆☆☆☆는 법령 연찬 부족 등으로「경상남도 일상감사 규정」 및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 사전절차와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계약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고,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적절한 대용품과 대체품이 있음에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 요청을 하지 않고,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하여 특정제품 규격을 명시하여 수의계약을 분할하여 추진한 것 또한 관련 법령 연찬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은 2017년 심신안정실 구성 물품 구입 시 계약 사전 절차 미이행 및 분할 수의계약 추진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지방소방교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②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고·시정·주의요구

제 목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 등 관내 24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 감리지정 신고, 소방시설 완공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소방시설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계통도(시설별 계산서 포함), 창호도,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5(특정소방대상물에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숙박시설은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고(완공검사신청서 제출),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 설계도면,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첨부하

여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소방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 시 확인된 사항

그런데도, ○○○○○ ☆☆☆☆☆에서는 아래 표 “건축물 동의 및 완공 부적정 현황”과 같이 ▽▽▽ 건축물 등 2건의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업무를 처리하면서,

▽▽▽ 건축물의 경우 숙박시설에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함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건축허가 동의한 사실이 있고,

▽▽▽의 경우 감리결과보고서에 소방펌프 종합정밀점검표(성적서) 가 첨부되어 있지 않음에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부하는 등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건축물 동의 및 완공 부적정 현황】

대상명	소재지 (건축주)	건축규모	건축허가 동 의	착공 (완공)	부적정 내용	비고
▽▽▽ 건축물 (숙박시설)	△△군 **면 // 리 828-1 (♡♡♡)	지하2층/ 지상4층/ 1,516.37㎡ (증축 835.55)	2019.03.27.		휴대용비상조명등 미 설계	
▽▽▽ (교육연구)	△△군 **면 // 로00번길 —	지상2층/ 2,640.96㎡ (증축 842.4)	2018.02.12.	2018.05.21.	펌프 종합정밀점검표(성적서) 미 첨부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관련법령에 대한 연찬 부족과 설계도서 등에 대한 검토 소홀 등으로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소방공사 등 감리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휴대용비상조명등 및 소방펌프 종합정밀점검표(성적서)는 보완하겠다고 수감기관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은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가「소방시설법」부적합에도 건축허가 동의한 ○○○○○ ☆☆☆☆☆ **실무담당자 지방소방위 △△△**에게「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 **(경고)**

②「소방시설법」에 부적합하게 설계된 □□□ **건축물의 휴대용비상조명등은 관련법령과 기준에 적합하게 시정조치** 및 **●●●●●의 소방펌프 종합정밀점검표(성적서) 보완**하고,**(시정)**

③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고·시정·주의요구

제 목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안전관리 지도 소홀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다중이용업소 22개소*에 대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였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식품접객업 11개, 게임제공업등 6개, 노래연습장업 3개, 체육시설 2개

2.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며, 소방서장에게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서장은 설계도서가 관련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기준에 맞게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 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은 별표2에 규정하고 있고, 별표2에 비상구의 설치 위치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에서 2017. 2. 24. ◎◎◎◎◎에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부적정

설치신고 시 아래 [그림1] '비상구 설치 도면'과 같이 1층의 비상구의 위치가 긴변(6,740㎜)의 2분의 1(3,370㎜)이 되지 않는 위치인 출입구로부터 3,100㎜ 떨어진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하여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그림1. 비상구 설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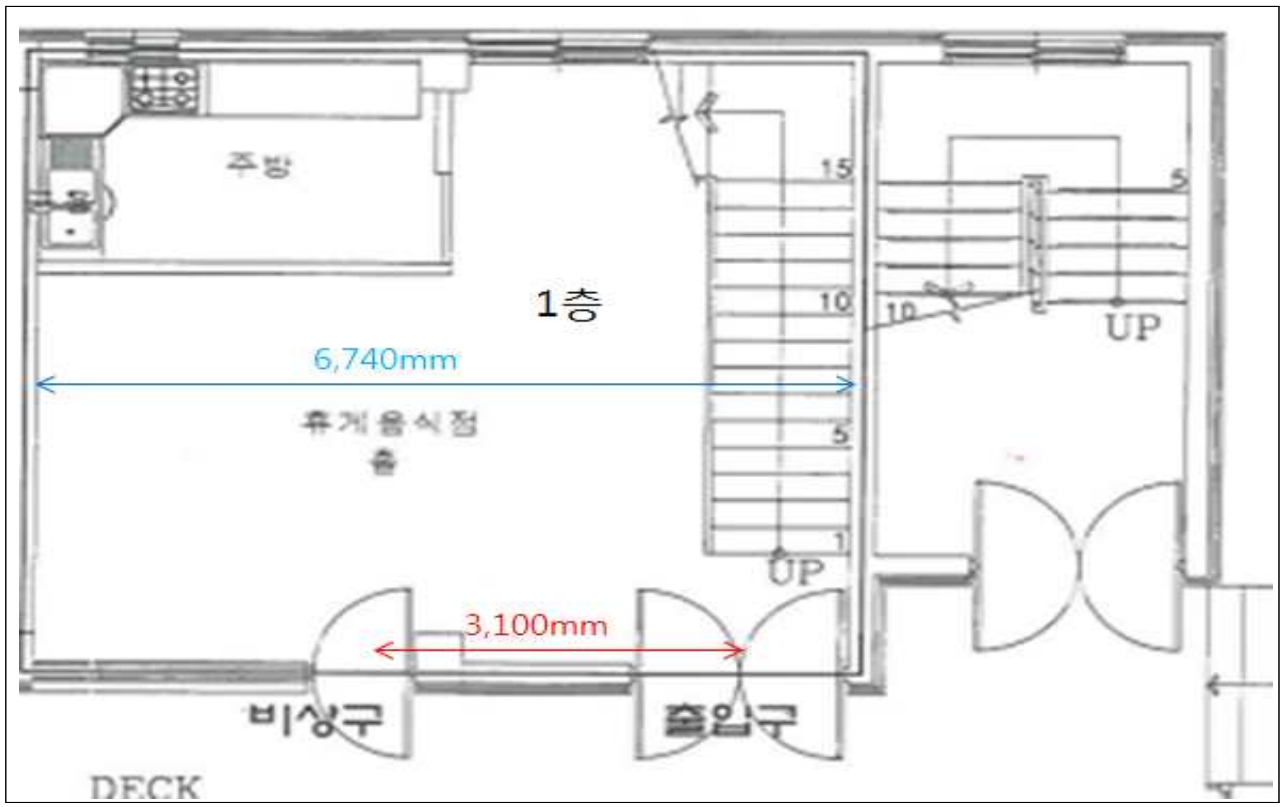

나. 다중이용업소 지도·관리 부적정

○○○○○ 감사기간인 2019. 6. 5. 현장 확인 결과 아래 [그림2] '영업장 확장 사진'과 같이 도면상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없이 영업장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9. 3. 7.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림2. 영업장 확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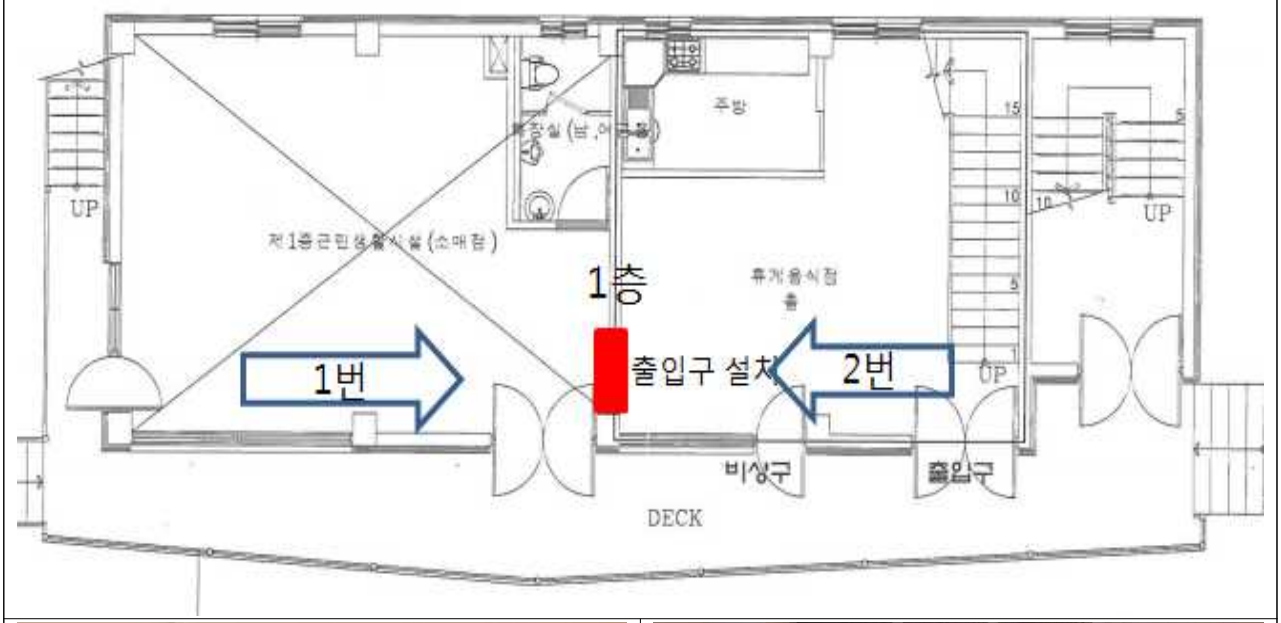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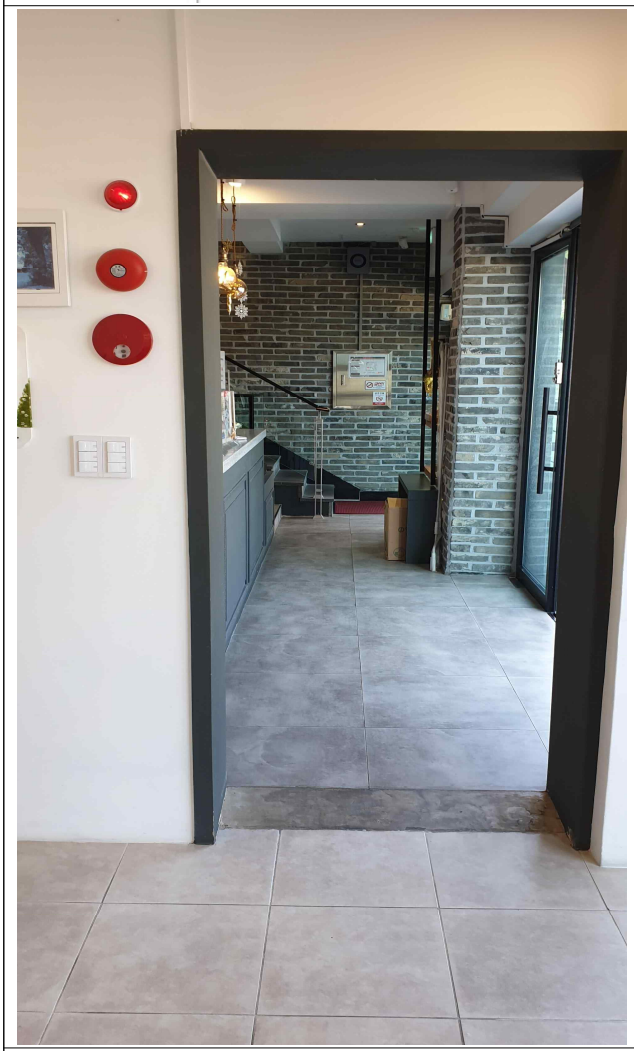

1번에서 촬영한 사진

2번에서 촬영한 사진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 ☆☆☆☆☆에서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일어난 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비상구는 분산 피난을 위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2017. 2. 24. □□□□ △△△△에 대하여, 1층 비상구가 긴변(6,740㎜)의 2분의 1(3,370㎜)이 되지 않는 출입구로부터 3,100㎜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보완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사실과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 결과 1층의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한 휴게음식점과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벽을 제거한 후 출입구를 만들어 영업장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9. 3. 7.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업무를 함에 있어 설계 도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규정에 맞지 않게 비상구를 설치하게 한 실무담당자 **지방소방장 △△△**과 다중이용업소 점검 시 안전시설 등이 설치 기준에 맞게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영업장이 확장되어 안전시설 등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화재특별조사 실무담당자 **지방소방장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경고”**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① ○○○○○에서는 □□□□ △△△△의 비상구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2017년 2월 24일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지방소방장 △△△**과 1층 영업장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점검 결과 양호처리한 **지방소방장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비상구 위치 부적합 및 안전시설 등 유지를 소홀히 한 □□□□ △△△△에 대해서는 법령에 적합하게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시정)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법령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주의요구

제　　목　화재조사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5월 현재까지 ♠♠화재 64건, ♠♠화재 91건, ♠♠화재 39건, ♠♠화재 1건, ♠♠화재 20건, ♠♠화재 143건 총 358건의 화재발생에 대한 화재조사를 하였고, 화재조사장비 법정구비 기자재 64종 중 53종을 보유하고 있다.

2. 화재조사장비 미보유 및 관리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소방기본법」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화재조사 전담부터의 설치·운영 등)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서에 화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 시 확인된 사항

그런데도, ○○○○○ ☆☆☆☆☆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는 발굴용구 등 64종의 법정구비 기자재를 보유하여야 하나, 아래 **【표 1】** “화재조사장비 보유 현황”과 같이, 미보유 기자재(휴대용 진공청소기 등 11종), 내용연한 경과 기자재(발굴용구 등 17종)등 총 28종 화재조사기자재를 구비 및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화재조사장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화재장비 보유 현황

구분	기자재 보유 기준	미보유 기자재	내용연한 경과 기자재 (구입일자/내용연수)
계	64종	11종	17종
발굴용구 (1종세트)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U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휴대용 진공청소기	휴대용 진공청소기	발굴용구세트(2010-05-31/6)
기록용기기 (15종)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카메라, 촬영용 고무매트, TV, 디지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웨어러블캠, 외장용 하드	웨어러블캠	소형디지털방수카메라(2011-06-20/5), 녹음기(2010-05-31/3), TV(2010-05-31/6), 촬영용 고무매트(2010-05-31/소모품), 초시계(2011-06-20/5), 저울(2010-05-31/6)
감식용기기 (10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미터,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탄화심도계	탄화심도계	누설전류계(2011-06-20/5) 클램프메타(2010-05-31/6) 절연저항계(2010-05-31/5)
조명기기 (4종)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휴대용랜턴, 헤드랜턴		헤드랜턴(2015-04-21/3)
안전장비 (8종)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공기호흡기세트		보호용장갑(2010-05-31/소모품) 안전화(2012-06-21/3) 보안경(2010-05-31/소모품)
증거수집 장비 (6종)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박스,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라텍스장갑(2012-06-21/소모품)
화재조사차량 (1종)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보조장비 (7종)	노트북컴퓨터, 소화기, 전선 릴, 이동용 에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화재조사 전용 피복, 화재조사용 가방	화재조사전용피복	이동용 에어컴프레서(2011-06-20/6)
추가 권장 장비 (2종)	휴대용디지털현미경, 정전기측정장치		정전기측정장치(2012-06-21/6)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10종)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 기구류(비이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항온항습기, 오토데시케이터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항온항습기, 오토데시케이터, 바이스	초음파세척기(2010-05-31/5) 드라이어(2010-05-31/5)

3.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조(조사구분 및 범위) 및 제48조(화재조사서류의 서식)에 따르면 화재원인조사 시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별지3-11호)를 활용하여 화재발생 대상에 대하여 조사 후 그 사항에 대하여 화재발생 종합보고서에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감사 시 확인된 사항

○○○○○ ☆☆☆☆☆에서는 아래【표 2】“화재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6년 10월부터 2019년 5월 현재 감사일까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에 대한 민원정보시스템 화재발생현황 입력 10회(♠♠군 ♠♠읍 **로 000-22 ♠♠♠♠ 000호 등 10곳) 누락하고,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작성 시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별지 3-11】기록 3회(♠♠군 ♠♠읍 **로 000-22 ♠♠♠♠ 000호 등 3곳), 민원정보시스템 화재발생현황 입력 10회(♠♠군 ♠♠읍 **로 000-22 ♠♠♠♠ 000호 등 10곳) 작성하지 않아, 소방방화시설이 작동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어, 각종 정보공개청구 및 재판 시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등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작성 부적정 현황

순	문서번호	문서제목	보고자	별지 3-11	민원정보 시스템	대상물 구분
1	☆☆☆☆☆ '16-0000	▼▼군 △△읍 **로 00 ♣♣♣ 301호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누락	누락	2급
2	☆☆☆☆☆ '16-0000	▼▼군 △△읍 **로 00 ♣♣♣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작성	누락	2급
3	☆☆☆☆☆ '17-0000	▼▼군 △△면 *** 00 ♣♣♣(주)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작성	누락	공장 (1급)
4	☆☆☆☆☆ '17-0000	▼▼군 △△면 **로 00 ♣♣♣♣♣♣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누락	작성	3급
5	☆☆☆☆☆ '17-0000	▼▼군 △△읍 ***로 00 ♣♣♣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작성	누락	2급
6	☆☆☆☆☆ '18-0000	▼▼군 △△읍 **로 00 ♣♣♣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작성	누락	2급
7	☆☆☆☆☆ '18-0000	▼▼군 △△읍 **로 00 ♣♣♣♣♣♣ 101동 000호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작성	누락	2급
8	☆☆☆☆☆ '18-0000	▼▼군 △△면 **로 00 ㈜♣♣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누락	누락	2급
9	☆☆☆☆☆ '18-0000	▼▼군 △△읍 **로 00 ♣♣♣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작성	누락	2급
10	☆☆☆☆☆ '18-0000	▼▼군 △△읍 **로 00 ♣♣♣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작성	누락	2급
11	☆☆☆☆☆ '19-0000	▼▼군 △△읍 **로 00 ♣♣♣ 2층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작성	누락	2급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소방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는【별표 6】의 기준에 의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화재조사장비는 경상남도 ☆☆☆☆☆에서 일괄 구매하여 일반·거점소방서로 배부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 ☆☆☆☆☆는 '17년, '18년 화재조사장비 구매예산으로 소방본부(거점소방서 포함)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 중 고가의 기자재(금속현미경, X선 촬영기, 시편성형기 등)를 우선 구매함으로써 예산부족으로 인해 일반·거점소방서에서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 중 미보유 기자재 및 내용연수가 도래한 기자재를 구매·배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에 화재조사장비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에서도 경상남도 ☆☆☆☆☆와 협의하여 규정에 맞는 화재조사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경상남도 ☆☆☆☆☆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년 화재조사장비 구매예산으로 해당 기자재 중 19종 337점을 '19년 6월 13일자로 일괄 구매하여 배부하였으며, 향후 화재조사장비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사전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필요 기자재를 즉각 구매·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에서는 민원정보시스템에 화재현황이 입력되지 않은 것은 내부시스템(국가화재정보시스템)간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나, 민원정보시스템에 자체적으로 수기입력이 가능해 담당자들의 업무수행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 화재발생건수 358건 중 미입력 건수가 10건에 지나지 않은 점, 감사 이후 입력을 완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금회에 한해 향후 업무처리 시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에서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별지3-12)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가 누락되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조 및 제48조에 따르면 화재원인조사 시 작성하는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별지3-11호)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구조・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소방방화시설의 효과적인 작동 여부와 화재 직전・진행 중 동작・사용 상태를 조사하여 소방의 예방・대책자료로 사용하고자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별지3-11호) 작성을 누락한 사실은 업무소홀 및 법령연찬 부족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별지3-11호) 작성을 누락한 **실무담당자 ○○○○○ ☆☆☆☆☆ 지방소방장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주의”**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① ○○○○○○은 화재조사결과 보고서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별자 3-11)을 작성을 누락 한 **실무담당자 ○○○○○ ☆☆☆☆☆ 지방소방장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고(주의)·주의요구

제　　목　구급의약품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매년 업무에 필요한 응급처치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을 구입하여 사용 및 보관, 폐기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2. 구급의약품 무단폐기 및 분실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구급장비 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에 의하면, 구급의약품의 보유기준과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으며,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의약품 및 소모품의 편성·운영에서는 구급장비담당자는 의약품의 배정, 소모, 유효기간 도래로 폐기한 경우 의약품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유효기간이 도래된 의약품은 문서로 보고한 후 폐기처분 시에는 보건소, 의료기관 등 폐기물 처리함에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 시 확인된 사항

그런데도, ○○○○○ ☆☆☆☆☆에서는 아래 [표 1] '구급의약품 무단폐기 현황'과 같이, 비마약성진통제(트리마돌)의 경우 2016년 이전에 100앰플을 구입하여, 이후 2018. 12. 13.자로 유통기한이 도래된 구급의약품(81앰플)에 대해 폐기계획을 수립하여 5차례 나누어 폐기 하였으며, 나머지 19앰플은 무단폐기 하였고, 항히스타민제(항알러지용)는 2016년 이전에 200앰플을 구입하여, 이후 2018. 07. 24.자로 유통기한이 도래된 구급의약품(90앰플)에 대해 폐기계획을 수립하여 4차례 나누어

폐기 하였으며, 2019. 02. 23.자로 유통기한이 도래된 구급의약품(108앰플)에 대해 폐기계획을 수립하여 5차례 나누어 폐기하였으며, 나머지 2앰플은 무단폐기 하였으며, 기관제확장제 2018. 02. 12.에 20앰플을 구입하여, 구급의약품(12앰플)을 분실하는 등, 구급의약품(트리마돌, 항히스타민제) 21앰플을 무단폐기 및 구급의약품(기관지확장제) 12앰플을 분실한 사실이 있다.

[표 1] 구급의약품 무단폐기(분실) 현황

품 명	구 입(앰플)			사 용 (앰플)	폐 기(앰플)		보유량	무단폐기 (분실)
	수 량	년월일	유효기간		수 량	년월일		
비마약성진통제 (트리마돌)	100	'16년 이전	'18. 12. 13.	-	81	'18. 12. 13. '18. 12. 14. '18. 12. 15. '18. 12. 16. '18. 12. 17.	0	**19**
항히스타민제 (항알러지용)	200	'16년 이전	'18. 07. 24.	-	90	'18. 10. 11. '18. 10. 05. '18. 10. 15. '18. 10. 11.	0	**2**
			'19. 02. 23.	-	108	'19. 02. 25. '19. 02. 21. '19. 02. 26. '19. 02. 13. '19. 02. 23.		
기관지확장제 (의료용분무기용)	20	'18. 02. 12.	'20. 01. 18.	-	-	-	8	**(12)**

3.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업무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에는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3]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에는 환자의 응급처치에 사용한 의료용 소모품이나 비품은 소속기관으로 귀환하는 즉시 보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등을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감사 시 확인된 사항

○○○○○ ☆☆☆☆☆에서는 아래 [표 2] '유효기간 초과 의약품 보관 현황'과 같이 니트로글리세린을 89일 경과 후 폐기 하는 등 13개 품목의 624개 의약품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 폐기처리 하여 의약품 관리업무를 소홀히 관리한 사실이 있다.

[표 2] 유효기간 초과 의약품 보관 현황

부 서 명	품 명	단 위	수량(개)	유효기간	폐기일자	경과일수
◇◇센터	니트로글리세린	병	16	2017-08-04	2017-08-05	1
			2	2018-07-12	2018-10-11	89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EA	2	2017-10-13	2017-10-14	1
	포도당 수액용 10%	팩	10	2017-10-06	2017-10-07	1
	포도당 수액용 50%	통	1	2017-01-07	2017-01-13	6
			1	2017-03-23	2017-03-24	1
			2	2017-06-11	2017-06-12	1
			1	2017-09-04	2017-09-05	1
			3	2018-08-26	2018-08-28	2
	비마약성진통제(진통용)	앰플	55	2018-12-13	2018-12-15	2
	항히스타민제(항알러지용)	앰플	70	2018-07-24	2018-10-11	77
			75	2019-02-23	2019-02-25	2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앰플	5	2017-10-01	2017-10-14	13
	에피네프린(부신호르몬제)	앰플	17	2018-12-21	2018-12-21	1
			19	2019-03-22	2019-03-23	1
			20	2019-03-22	2019-03-25	3
	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	앰플	18	2019-01-31	2019-02-06	6
	생리식염수 수액용 500ml	팩	13	2017-09-28	2017-09-29	1
	생리식염수 수액용 1000ml	팩	4	2017-12-01	2017-12-06	5
	니트로글리세린	병	2	2017-05-10	2017-05-16	6
			2	2018-05-14	2018-05-16	2
			2	2018-12-15	2018-12-14	1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EA	2	2016-09-22	2016-10-06	14
			2	2018-07-24	2018-07-25	1
■■센터	니트로글리세린	병	2	2017-05-10	2017-05-16	6
			2	2018-05-14	2018-05-16	2
			2	2018-12-15	2018-12-14	1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EA	2	2016-09-22	2016-10-06	14
			2	2018-07-24	2018-07-25	1
	포도당 수액용 10%	팩	4	2017-07-06	2017-07-09	3
	생리식염수 수액용 1000ml	팩	2	2017-12-01	2017-12-06	5
	비마약성진통제(진통용)	앰플	3	2018-12-13	2018-12-14	1
	에피네프린(부신호르몬제)	앰플	20	2019-03-22	2019-03-25	3
	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	앰플	10	2017-04-30	2017-05-07	7
			6	2019-01-31	2019-02-01	1
	기관지확장제(의료용분무기용)	앰플	2	2017-10-17	2017-10-23	6
			5	2018-01-24	2018-01-26	2
	포도당 수액용 50%	통	3	2017-06-11	2017-06-23	12
			2	2017-09-04	2017-09-06	2
			2	2018-08-26	2018-08-28	2
	하트만 솔루션 1000ml	팩	1	2017-10-22	2017-10-23	1
♠♠센터	니트로글리세린	병	2	2018-07-12	2018-07-13	1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EA	1	2016-09-22	2016-10-01	9
			1	2017-04-24	2017-05-02	8

부 서 명	품 명	단 위	수량(개)	유효기간	폐기일자	경과일수
			1	2017-10-13	2017-10-16	3
			1	2018-07-24	2018-07-27	3
	생리식염수 수액용 1000ml	팩	1	2017-12-01	2017-12-03	2
	비마약성진통제(진통용)	앰플	7	2018-12-13	2018-12-17	4
	항히스타민제(항할러지용)	앰플	10	2019-02-23	2019-02-26	3
	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	앰플	6	2017-04-30	2017-05-02	2
			6	2019-01-31	2019-02-01	1
	기관지확장제(의료용분무기용)	앰플	5	2018-01-31	2018-02-01	1
			5	2019-02-25	2019-02-26	1
	포도당 수액용 50%	통	4	2017-06-11	2017-06-13	2
			2	2019-02-25	2019-02-26	1
▽▽지역대	니트로글리세린	병	1	2017-05-10	2017-05-26	16
			1	2017-07-21	2017-07-23	2
			1	2018-07-12	2018-07-26	14
			1	2018-12-15	2019-01-18	33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EA	1	2017-10-13	2017-10-25	12
			1	2018-12-12	2019-01-18	36
	포도당 수액용 10%	팩	2	2017-07-06	2017-07-23	17
	생리식염수 수액용 500ml	팩	3	2017-12-06	2017-12-09	3
	생리식염수 수액용 1000ml	팩	3	2017-12-06	2017-12-09	3
	비마약성진통제(진통용)	앰플	7	2018-12-13	2019-01-18	35
	항히스타민제(항할러지용)	앰플	2	2018-10-11	2018-10-15	4
	에피네프린(부신호르몬제)	앰플	20	2018-12-21	2019-01-18	27
			20	2019-03-22	2019-04-01	9
	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	앰플	2	2017-04-30	2017-05-02	2
			6	2019-01-31	2019-02-13	13
	기관지확장제(의료용분무기용)	앰플	5	2017-10-01	2017-10-25	24
			5	2018-01-24	2018-02-05	11
	포도당 수액용 50%	통	3	2017-08-04	2017-08-10	6
			1	2017-09-04	2017-09-18	14
			1	2019-02-25	2019-02-28	3
♣♣지역대	니트로글리세린	병	1	2018-05-14	2018-05-17	3
			1	2018-12-15	2018-12-16	1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EA	1	2018-01-19	2018-01-29	10
			1	2018-12-12	2018-12-16	4
	비마약성진통제(진통용)	앰플	9	2018-12-13	2018-12-16	3
	항히스타민제(항할러지용)	앰플	10	2018-10-11	2018-10-18	7
			10	2019-02-23	2019-02-26	3
	에피네프린(부신호르몬제)	앰플	20	2018-12-21	2018-12-28	7
	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	앰플	6	2019-01-31	2019-02-06	6
	기관지확장제(의료용분무기용)	앰플	5	2018-01-24	2018-01-29	5
			5	2019-02-25	2019-02-26	1
	포도당 수액용 50%	통	3	2019-02-25	2019-02-26	1

관계기관 의견 ○○○○○에서는 의약품 관리대장 및 현장 관리상태 확인을 소홀이 하여 이런 일이 생겼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① ○○○○○은 구급의약품 관리(무단폐기 및 분실) 및 폐기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 ☆☆☆☆☆ 지방소방교 ♠♠♠('현 ▽▽119안전센터), 지방소방사 ♠♠♠**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경고"** 조치하시기 바라며**(경고)**

② 구급의약품 폐기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 ☆☆☆☆☆ 지방소방장 ♠♠♠('현 ○○○○○ △△119안전센터)**에게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의거 **"주의"** 조치하고**(주의)**

③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